|  |  |  |
| --- | --- | --- |
| **2.3.1 <풍력발전소 공정건설용지 및 환경보호 관리 임시방법> 발표에**  **관한 통지**  발개능원〔2005〕151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신강생산건설병단 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청(국), 환경보호국(청):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우리나라의 풍력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 및 촉진할 뿐만 아니라 풍력발전소 개발 건설을 규범화하고 가속화하며 사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토자원부 및 국가환경보호총국과 공동으로 <풍력발전소 공정건설용지 및 환경보호 관리 임시방법>을 제정하여 이를 지금 발표하니 성실하게 철저히 수행하여 주길 바란다.  첨부문건: <풍력발전소 공정건설용지 및 환경보호 관리 임시방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국가환경보호총국  2005년 8월 9일  **풍력발전소 공정건설용지 및 환경보호관리**  **임시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풍력발전을 지원하며 풍력발전소 개발 건설을 규범화하고 가속화하기 위하여 또한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유관 법률 및 법규에 의거하고 풍력발전소 건설의 특징을 결합시켜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계획 건설되는 풍력발전소 공정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제2장 건설용지**  **제3조** 풍력발전소 건설용지는 토지 절약 및 집약이용 원칙에 따라 미사용 토지를 최대한 사용하고 경작지를 최소 점용하거나 점용하지 않는다. 또한 성급 이상 정부무문이 법에 의거하여 비준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최대한 회피한다.  **제4조** 풍력발전소 공정건설용지는 실제 점용 토지면적에 따라 계산하고 토지를 징수한다. 밀폐식으로 관리하지 않는 풍력발전소의 풍력발전세트 용지는 기초 실제 점용면적에 따라 토지를 징수한다. 풍력발전소의 기타 영구 시설 용지는 실제 점용면적에 따라 토지를 징수한다. 건설 시공기간의 임시토지는 법에 의거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풍력발전소의 공정건설용지 예비심사업무는 성급 국토자원관리부문이 책임지고 진행한다.  **제6조** 건설용지단위는 심사비준을 신청하기 전에 토지 예비심사 비준문건을 취득해야 한다. 토지 예비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건설용지 예비심사 신청표.  2. 예비심사시 신청보고 내용: 건설예정 프로젝트의 기본현황, 입지선정 현황, 토지 전체 규모 및 토지 유형 등의 내용, 경작지를 점용한 건설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경작지 초보방안을 보충하여 제출해야 함.  3. 프로젝트 예비 사업타당성 연구보고.  **제7조** 프로젝트 건설단위가 심사비준 프로젝트를 신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성급 국토자원관리부문의 예비심사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예비심사 의견이 없거나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설프로젝트를 심사비준 할 수 없다.  **제8조** 풍력발전소 프로젝트에 대하여 심사비준을 취득한 후, 프로젝트 건설단위는 법에 의거하여 토지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농용지 및 집체토지와 관련된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농용지 전용 및 토지 징수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3장 환경보호**  **제9조** 풍력발전소 공정건설 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실행한다. 풍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소재지 성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책임지고 심의비준한다. 국가급 자연보호구역과 관련된 풍력발전소 공정건설프로젝트인 경우에는 모두 성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심의비준 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의 의견을 자문해야 한다.  **제10조**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보고표를 성실하게 편제한다. 풍력발전 계획, 예비 사업타당성 연구보고, 사업타당성 연고보고는 모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편과 장을 마련하여 풍력발전의 환경문제, 채택하고자 하는 조치 및 효과에 대하여 분석과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제11조** 건설단위는 프로젝트 심사비준을 신청하기 전에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비준문건을 취득해야 한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상응하는 자격을 구비한 단위에 의뢰하여 작성해야 하고 “풍력발전소 공정건설용지 환경영향보고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프로젝트 건설단위가 프로젝트 심사비준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성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의 심의비준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심의비준 의견이 없거나 심의비준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설프로젝트를 심사비준 할 수 없다.  **제13조** 풍력발전소 공정에 대하여 심사비준을 받은 후, 프로젝트 건설단위는 환경영향보고표 및 심의비준 의견의 요구사항에 따라 환경보호 설계를 강화하고 환경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시행한다. 규정된 절차에 따라 환경보호 시설에 대한 준공검수를 신청해야 한다. 준공검수에 합격한 후에 비로소 해당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투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기 타**  **제14조** 각 성(구, 시)의 풍력발전소 공정계획보고는 각 성(구, 시) 발전개혁위원회가 유관 단위를 책임지고 조직하여 편성한다. 계획 편성 과정에서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해당 계획과 관련된 환경영향의 편과 장 또는 설명을 편집해야 한다. 성급 국토자원관리부문은 풍력발전소 계획 용지에 대한 합리성에 대한 심사확인을 책임지고 진행하고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전체 계획과의 연결업무를 수행한다. 성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계획의 환경문제에 대한 심사확인을 책임지고 진행한다.  **제5장 부 칙**  **제15조** 건설용지 예비심사는 <건설프로젝트 용지 예비심사관리방법>(국토자원부려여 제27호)에 따라 집행한다. 건설용지 예비심사 신청표, 건설용지 예비심사 신청보고, 풍력발전소 공정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보고표는 첨부문건 1 ~ 첨부문건 3의 양식을 참고한다.  **제16조** 본 방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및 국가환경보호총국에 해석 책임이 있다.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첨부문건 1: 풍력발전소 공정건설용지 예비심사 신청표  첨부문건 2: 풍력발전소 공정건설용지 예비심사 신청보고  첨부문건 3: 풍력발전소 공장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보고표 |  | **关于印发《风电场工程建设用地和环境保护管理暂行办法》的**  **通知**  发改能源〔2005〕1511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新疆生产建设兵团发展改革委、国土资源厅（局）、环保局（厅）：  为了贯彻实施《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积极支持和促进我国风电发展，规范和加快风电场开发建设，促进社会经济可持续发展，国家发展改革委会同国土资源部和国家环保总局制定了《风电场工程建设用地和环境保护管理暂行办法》，现印发你们，请认真贯彻落实。  附件：《风电场工程建设用地和环境保护管理暂行办法》  国家发展改革委  国 土 资 源 部  国 家 环保总局  二○○五年八月九日  **风电场工程建设用地和环境保护管理暂行办法**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贯彻实施《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支持风电发展，规范和加快风电场开发建设，促进经济社会可持续发展，依据国家有关法律法规，结合风电场建设的特点，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适用于规划建设的风电场工程项目。  **第二章 建设用地**  **第三条** 风电场工程建设用地应本着节约和集约利用土地的原则，尽量使用未利用土地，少占或不占耕地，并尽量避开省级以上政府部门依法批准的需要特殊保护的区域。  **第四条** 风电场工程建设用地按实际占用土地面积计算和征地。其中，非封闭管理的风电场中的风电机组用地，按照基础实际占用面积征地；风电场其它永久设施用地按照实际占地面积征地；建设施工期临时用地依法按规定办理。  **第五条** 风电场工程建设用地预审工作由省级国土资源管理部门负责。  **第六条** 建设用地单位在申请核准前要取得用地预审批准文件。用地预审申请需提交下列材料：  1、建设用地预审申请表；  2、预审申请报告内容包括：拟建设项目基本情况、拟选址情况、拟用地总规模和拟用地类型等，对占用耕地的建设项目，需提出补充耕地初步方案；  3、项目预可行性研究报告。  **第七条** 项目建设单位申报核准项目时，必须附省级国土资源管理部门预审意见；没有预审意见或预审未通过的，不得核准建设项目。  **第八条** 风电场项目经核准后，项目建设单位应依法申请使用土地，涉及农用地和集体土地的，应依法办理农用地转用和土地征收手续。  **第三章环境保护**  **第九条** 风电场工程建设项目实行环境影响评价制度。风电场建设的环境影响评价由所在地省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负责审批。凡涉及国家级自然保护区的风电场工程建设项目，省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在审批前，应征求国家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的意见。  **第十条** 加强环境影响评价工作，认真编制环境影响报告表。风电规划、预可行性研究报告和可行性研究报告都要编制环境影响评价篇章，对风电建设的环境问题、拟采取措施和效果进行分析和评价。  **第十一条** 建设单位在项目申请核准前要取得项目环境影响评价批准文件。项目环境影响评价报告应委托有相应资质的单位编制，并提交“风电场工程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表”。  **第十二条** 项目建设单位申报核准项目时，必须附省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审批意见；没有审批意见或审批未通过的，不得核准建设项目。  **第十三条** 风电场工程经核准后，项目建设单位要按照环境影响报告表及其审批意见的要求，加强环境保护设计，落实环境保护措施。按规定程序申请环境保护设施竣工验收，验收合格后，该项目方可正式投入运营。  **第四章 其它**  **第十四条** 各省（区、市）风电场工程规划报告由各省（区、市）发展改革委负责组织有关单位编制，应当在规划编制过程中组织进行环境影响评价，编写该规划有关环境影响的篇章或者说明。省级国土资源管理部门负责对风电场规划用地的合理性进行审核，并做好与本地区土地利用总体规划的衔接工作；省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负责对规划的环境问题进行审核。  **第五章 附则**  **第十五条** 建设用地预审按照《建设项目用地预审管理办法》（国土资源部令第27号）执行。建设用地预审申请表、建设用地预审申请报告和风电场工程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表格式见附件一～附件三。  **第十六条** 本办法由国家发展改革委、国土资源部和国家环保总局负责解释。自发布之日起执行。  附件一：风电场工程建设用地预审申请表  附件二：风电场工程建设用地预审申请报告 附件三: 风电场工程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表 |